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4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2. 24 선고 2020나1208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448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김도연, 권선례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위종욱

변론 종결 2020. 4. 29.

판결 선고 2020.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9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피고의 형이다. 원고는 4남매 중 첫째이다.
- 2) C는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이고, D는 원고의 여동생이자 피고의 누나이다.

나. 원고의 E 상가 매도

원고는 2011. 7.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E 상가'라고 한다)을 F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1,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명의 계좌 개설 및 입출금 내역

- 1) 원고는 2011. 7. 25. 피고가 근무하는 G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다음 날 이 사건 계좌에 부동산 매매대금 1,3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 2)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1. 7. 25.	예금신규			
2011. 7. 26.	전액타점 A		1,340,000,000	
2011. 7. 26.	대체지급	40,000,000		1,300,000,000
2011. 7. 26.	대체지급	15,000,000 D		1,285,000,000
2011. 7. 26.	예탁금	40,000,000 H		1,245,000,000
2011. 7. 26.	대체지급	1,245,000,000		0
2011. 7. 27.	이용료		H 2,665	
2011. 8. 2.	대체입금		800,162,260	800,164,925

2011. 7. 25.	예금신규			
2011. 8. 2.	예탁금	800,164,925 H		0
2011. 8. 3.	이용료		H 53,234	53,234
2011. 9. 17.	예금결산	예금결산이자		53,234
2011. 9. 30.	대출입금		대출금입금 60,000,000	60,053,234
2011. 9. 30.	일부대체	60,050,000		3,234
2011. 10. 26.	대체입금		141,409,450	141,412,684
2011. 10. 26.	대체지급	132,000,000		9,412,684
2011. 10. 28.	대체지급	7,500,000		1,912,684
2011. 11. 1.	대체지급	1,912,684 D B		0
2011. 12. 17.	예금결산		예금결산이자 62	62

라. 원고의 I 상가 매수

- 1) 원고는 2011. 8. 2. J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I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
- 2) 원고는 2011. 8. 2. J에게 I 상가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176,000,000원을 제외한 964,000,000원(= 1,140,000,000원 -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3) 원고는 2011. 8. 5.경 I 상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 공과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에 대한 법무사 비용으로 합계 54,599,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30. E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23,445,37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금원대여

원고는 2011. 9. 16. 및 2011. 10. 25. 피고에게 각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 14, 16, 19, 21, 22,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지급을 허락한 I 상가의 매매대금, I 상가 매입관련 제반 비용 54,599,000원, E 상가 양도소득세 등 23,445,370원, E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40,000,000원, I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40,000,000원, D에 대한 채무변제액 등 45,000,000원, 피고, D, K에 대한 증여액 합계 10,000,000원을 공제하면 162,995,630원(= 1,340,000,000원 - 964,000,000원 - 54,599,000원 - 23,445,370원 - 40,000,000원 - 40,000,000원 - 45,000,000원 - 10,000,000원)이 남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액수 전부를 C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는 이 중 132,000,000원만을 C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30,995,630원은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4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40,000,000원(= 80,000,000원 - 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이후 자신이 직접 입출금을 하지 않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지시 내지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을 처분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그 사용처를 인정하는 금액만도 1,309,004,370원에 이른다. 위 금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97.68%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제반 비용을 모두 정산하고 남은 돈이

176,000,000원이라고 듣고 이를 모두 C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32,000,000원만 C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차액 상당액을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처분을 인정하는 금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하는 돈은 162,995,630원이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남아 있어야 하는 돈보다 많은 176,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허위로 알려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C, D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는 당시 C가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금원은 172,000,000원이었는데, D가 C로부터 그 중 4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가 2011. 10. 26. C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신설하여 합계액 132,000,000원(172,000,000원 - 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172,000,000원은 원고가 그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I 상가를 매입하고 제반 비용을 처리하여 정산한 시점은 2011년 10월경이다.

원고는 그로부터 7년여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원고는 C와 사이에 금전문제로 다툼이 생긴 이후인 2018. 8. 1.에서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해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E 상가 매매 이후는 물론이고 7년여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한 아무런 확인 및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더욱이 원고는 I 상가를 담보로 2014. 1. 23., 2015. 1. 21., 2015. 4. 23.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금전이 필요할 경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남아 있는 돈을 확인하여 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일 것임에도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의 돈을 이 사건 계좌에 그대로 남겨두고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된다.

이 사건 계좌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⑤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어야 하는 돈의 액수에 관한

주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 비록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일자, 기간, 거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입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원고의 허락 내지 지시에 따라 처분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다만 원고가 그 지시 여부나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임의로 소비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6. 1,000만 원, 2011. 10. 21. 3,000만 원을, 원고의 처 L에게 2013. 3. 28.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각 돈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점, 위 각 돈의 금액이 이 사건 각 대여금액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1. 9. 16. 1,000만 원, 2011. 10. 21.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향우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요청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돈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희

판사박찬범

판사오승희

별지